# 초강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16. 12



🗻 충 청 북 도

### 제1장 계획의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 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용수공급,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정비,보전,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함

## 1.2 과업의 범위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 용산면 시금리 490 일원

○ 사업규모 : L = 14.031km(NO.0+000~14+031)

### 1.3 계획의 추진근거

###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초강 하천기본계획은「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의 전략환경영 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표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일정

○ 2016. 3. : 초강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착수

○ 2016. 3. : 초강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초강 하천기본계획(재수립)

- 2016. 5. 26 ~ 6. 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심의)
- 2016. 6. 23 ~ 7. 6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6. 8. 3 ~ 8. 12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자문의견 수렴(서면)
- 2016. 8. 3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16. 9. 9 ~ 10.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2016. 9. 29 : 하천구역(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

### 1.5 계획의 내용

- 시간적 범위 : 계획 수립 후 10년
- ㅇ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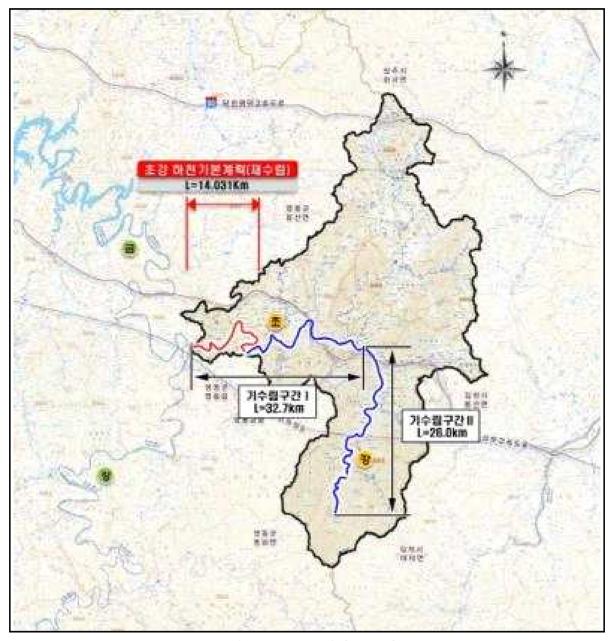
### [표 - 2] 계획의 공간적 범위

	원원대	하천	계획	구간	01 T}/1)	÷l ≖/\
구분	하천명	등급	시점	종점	연장(km)	하폭(m)
초강	テフレ	≠1µ1	충북 영동군	충북 영동군	14.001	70 004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초강	지방	심천면 심천리 금강(국가) 합류점	용산면 시금리 490	14.031	70~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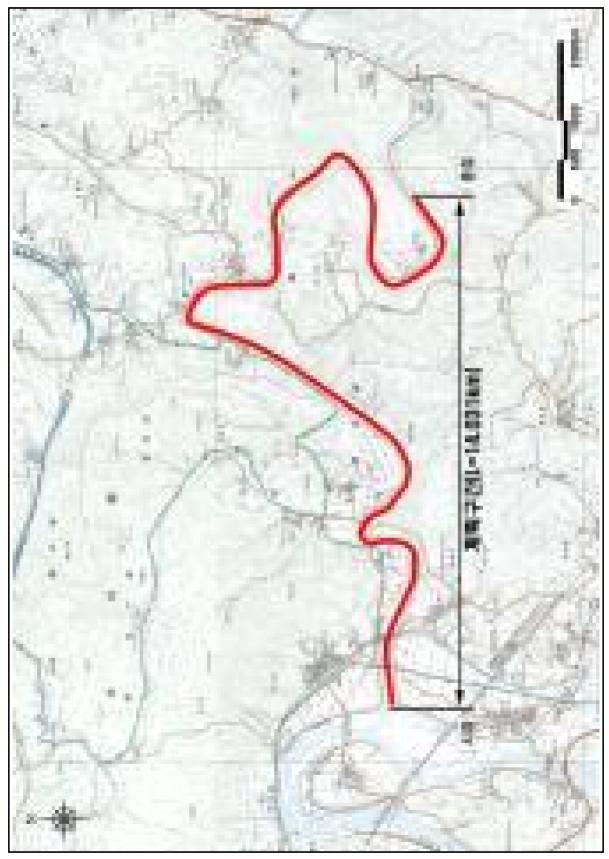
#### [표 - 3]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구분	계	연장	유역면적	유로연장	비고	
	시점	종점	(km)	(km²)	(km)	미끄
기소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매곡면 면계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강 합류점)	32.7	680.87	32.7	1986년1)
기수립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추풍령천 합류점	26.0	183.18	27.5	1992년2)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금강(국가) 합류점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시금리 490	14.031	664.09	63.07	

- 주) 1. 지방하천인 초강의 전체구간(58.7km) 중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구간은 없음
  - 2. 1986년 기수립된 과업구간 중 일부 구간(5.8km)는 초강 고향의강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1년 11월)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함



(그림 - 1) 유역현황도(초강)



(그림 - 2) 계획구간 위치도

###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2.1 초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내지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환경 전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청, 영동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작성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2.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 가.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 충청북도청

### 나. 신문공고

○ 중앙일간지(한겨례신문) : 2016년 9월 9일 금요일

○ 지방일간지(충청타임즈) : 2016년 9월 9일 금요일

### 다. 정보통신망 게시

○ 충청북도 홈페이지 : 충청북도 공고 제2016 - 926호

○ 영동군 홈페이지 : 충청북도 공고 제2016 - 926호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 라.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년 9월 9일 ~ 2016년 10월 12일(20일)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충청북도 치수방재과, 영동군 안전관리과, 심천면·용산사무소

### 마.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2.2.2 주민설명회 개최

###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6년 9월 29일 (목) 10:30

○ 개최장소 :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2층

### 나. 참석자

○ 참석인원 : 22인

- 지역주민 : 지역주민 16인

- 충청북도 : 치수방재과장 과장 외 1인

- 영 동 군 : 안전관리과 과장 외 1인

- 용 역 사 : ㈜ 청우 2인, ㈜ 세종이엔엘 2인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결과(관계기관 및 주민)

○ 금강유역환경청 : 환경평가과

○ 충청북도청 :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 영동군청 : 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

### 2.2.3 주민의견수렴 관련 자료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신문공고

# 신문 공고

### 하거레

2016년 09월 09일 (급 19번 공고/고시

총청복도 광고 제2016 - 926호

#### 영동천·초강·보청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영동천·초감·오덕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법에 따른 천략환경영 항공기서(초안)과 하천구역(안)에 대하여 「환경영환경기법」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명 제13조, 제14조, 제15조와 「모지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 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광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 충청북도지사

#### 1.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개요

이산명	<b>7</b>	연장(🖦)	유역
명용선	영흥군 영종을 ~ 영흥군 삼천면 (감간 함류)	7.80	급관
北 市	영등군 용산면 - 명통군 삼천면 (급강 립투)	14.03	94
보용전	목원군 용단면 ~ 목원군 용성면 (급상 합류)	16.32	9.6

#### 2. 주민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 9. 9. ~2016. 10. 12.(20일) 공람장소 도 치수당재과 및 하천별 해당 군 하전부사. 읍·면 사무소
- 공고모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 신문공고(일간지 및 자약지)

#### 3. 주민설명회 개최

- 보 청 천 : 2016. 9. 28.(수) 14 : 00 육천군 청성면사무소 초 같: 2016. 9. 29.(목) 10 : 30 암동군 삼천면사무소 염 몸 천 : 2016. 9. 29.(목) 14 : 00 엄동군 심천면사무소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6, 10, 21, 18 : 00 (공암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 공맹기간내 서유일만 후 시면 제출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복도 치수방재과(☎043-220-2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타임즈

2016년 09월 09일 (공) 07면 오피니언

#### 충청복도 공고 제2016 - 926호

#### 영동천·초강·보청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안)·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영웅선 - 혼간 - 오디전 참석전태기보세력 수밖에 따른 전략관점연速범기서(송약)가 하하구역(아)에 대하여 '환경영안원가명, 제12주, 제13주 및 같은법 사원인 제13주, 제14 조. 제15조와 '토지이유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감은법 시생성 제6조의 규칙에 의거 추인 답역 역전을 수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

하천명	위 치	연장(m)	유역
영동선	영동군 영동아 ~ 영동군 위원년 (귀강 (바다)	7.88	- 25
直 臣	영동군 용산면 ~ 영동군 위원면 (급강 방부)	14.03	7.0
보칭편	육환군 청산년 ~ 육원군 청성년 (금강 (유각)	16.32	97.0

#### 2. 주민 공항기간 및 장소

- 공합기간: 2016. 9. 9. 2016.10.12. (20점)
- 공합장소: 도 치수양제과 및 유원병 배당 군 유원부시, 유·년시무소
- # 공고문은 도 및 서·궁 유례이지 계시, 신문공고(영간지 및 자연지)

#### 3. 주민상명화 개최

- 보정한: 2016. 928.(수) 14:80 옥천군 항성면사무소
- 조 강: 2016, 9.29 (독) 10:30 영동군 당전면사무소
- 영동원: 2016, 9,29,(목) 14:00 명동군 삼완면사무소

#### 4. 주면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6.10.21. 18:00 (권단기간 반료업로부터 7일 이대)
- 제출방법 : 공합기간내 서류양암 후 시면 제출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복도 치수밤재과(\$643-220-2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나. 정보통신망 게시



### 다. 주민설명회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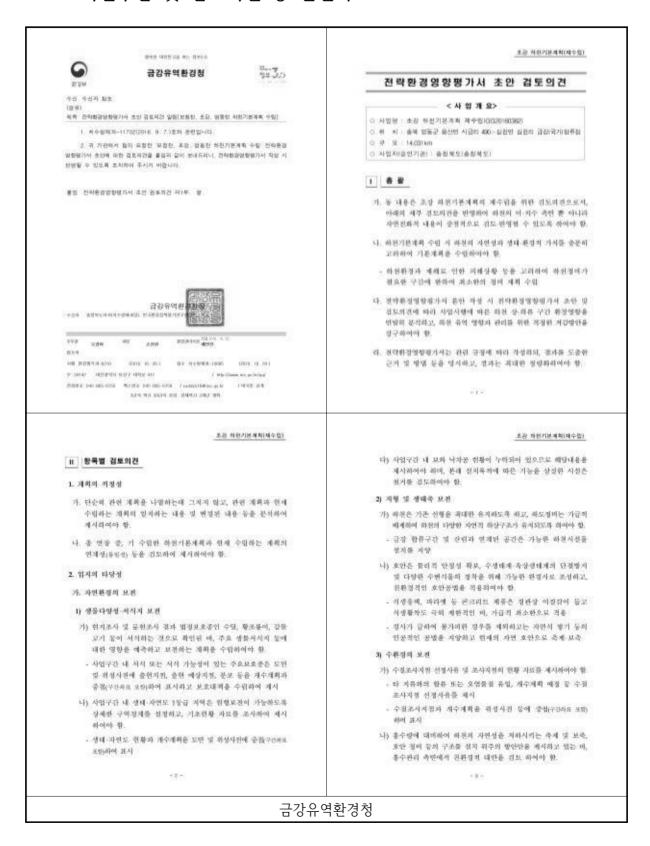


### 라.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2.2 초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 2.2.1 의견수렴 및 검토의견 등 관련자료



#### 호강 하천기본계회(재수립)

- 용당지구는 기존지방도를 제방점용도로로 이용하고 제방과 도로사이의 도치를 수현완충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시금 2지구는 축제계획 대신 산지까지의 구간을 하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경통
- 한식 1, 2지구는 하폭 및 제방고 부족으로 계획하였으나, 우안족이 배립되어 하폭확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간단되는 마, 지수로 구간의 중설을 가급적 지양하고 제방덧붙기 등의 대안검도
- 다) 쪽마루 포장미부를 명확히 계시하고, 포장한 경우 생태적 기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 등의 볼투수성 포장을 지방하여야 함.
- 다) 대상 하천의 하류 수벤구의 해당구간은 자연성을 최대한 보건할 수 있도록 제방 등 하청시설을 설치를 지당하고, 제정한 자감대회을 수립하석야 한.
- 수변구역 내 개수계획 여부를 당확히 알 수 있도록 위성사권에 중심하여 표시
- 나,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1) 환정전화적 도지이용
- 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농정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다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다. 기타

- 본 전략환경영합평가서 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권략환경영합 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 시에는 미반일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영역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를 함께 제시

#### 조강 하천기본계회(제수립)

- 2) 위성사전과 도면 등에 속제 및 보속계획, 교람 및 보 정미계획, 지구구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됩구간라표 모합하여 제시 점이야 함
- \* 환경영화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6434.5);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합평가 대행계획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급액이 표시된 서류등 제시
  - 현지조사료와 참여자 명단 등은 규정의 (별표2)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점 및 시간, 조사자의 서명 남인 후 제시, 끝.

-5-

### 금강유역환경청

출점 : 권토의간 1부, 광

환경정책과정상

# 보정천, 영동천, 초강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 사업개요

구 분	영통한 하신기본계리	보행한 하찬기본제화제수집	호함 하천기본계화/제수합
과업위지	(사업생용을 제는인 867-134 (공장심원은 초일의 공연합위점	(시험의원군 정난한 지원되어) 2 (중합의원군 정성한 양자리 502	(시청영영군 성선원 성원의 (중청용산원 사급의 400일원
하산연장	7.80km	36.319km	14083km
NO 25 PER	0845	9845	8845

#### □ 검토의건

- 본 제회은 지방 하천인 관리운영을 위한 하천기본제회(제수립)으로 상위계획과 부합하게 추권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별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급감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개발사업 편책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자연환경보관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끄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송약(안이가 동)렌자는 송약 등의 원모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 부과자료를 우리도(환경정의자) 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구간 내 원자조사결과 수당, 빨당, 황조롱, 감동고기 등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 먹이원 등에 영 참을 줄 우리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 영향평가 지칭" (13.11)에 따라 동인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 조성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충청북도(환경정책과)

- O 하천수질에 부정적인 명함을 최소화 활 수 있도록 해당 유익의 강 우 및 지행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홍수량, 홍수위, 비점오염원 등을 중합적으로 경토하여 하천과 유역투성에 맞는 천환경격인 제감방 안을 수립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추진함이 바람리함.
- O 사업 시행 시 공사가 따르는 사람으로 환경관련 제반규정(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말 생되는 폐기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후 전략환경영항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환경 또는 예측의 무 걱정 등으로 계획시의 주변의 환경상해가 약 화(오염 등)웹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계례 대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 괴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O 본 검토의권은 우리도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권으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법 및 타 부서소관 관련사항은 별도의 전도 협의를 통하여 사업은 주건하여야 함.

### 충청북도(환경정책과)



AM 18353-100 (200.3 (0) \$10 A1843-100

9-2005 - 8595, 974-997-998-9-(946, 8695)D-1 www.diffred 28/02 00:29-001 MANS 90:25-000 TredSDM(res) /95/038 404 SEASSANISSANISSANIS N. 4 - 10 H. EDSSANI

### 검토의견서(16-95)

- 건명: 양동정의 2건 하천기본계의 진락영향평가서(조인) 협의
- □ 관련문서 : 치수병제과-11702(2016.9.7)
   □ 수질준리과 검토의건

भा	ч	તા પ્રદાય શ	明.近
4	w. yg	. 배당시한 열음	1140 0.64
H-P	MAIL.	- 배당사학 없은(위탁거리)	44% 34%
468	4이용 (세워(4) 본업	- 배당시장 않음	시설70 沈項報
.88	수세	- 제당사장 결속	и 277р ИНФ
다 강 자연성	보 연 중앙세	중속회자구는 단당수개통학전 및 구선처인 등에 관한 법률 배보여 의한 당본도보임도 유럽도 단위하여의 배당되어 구설모인통생임감가문 박의 제모르에 되는 구분들었기 등 분사식별이 제외개발부탁을 받혀 내려서 배출부위성을 받인한수 구선하여만 하므로 그 단취유여센도 병충건강산도 소설지, 유건건보생산인단시의 사실합되어야 함	E 840 1127
Sterior.	수 년 구 역	사업에정치는 수업구에으로 군장수계환은의 및 우인지원 등에 관한 접한 제5초(행위계한)에 하기 생위 제한 미부를 사업시생剂 생동군목 사원합의 하석야 함	19 19 62 18 18 71
명 설 명명명	숙점	배당시한 얼음	u tiet ri dei
환경 정의 기본명	부센 대체 식억	- 배당사약 임손	9 86 1 8 7
21	ri-		

충청북도(수질관리과)

67616 D. 193.0



#### 환경명향평가협의회 심사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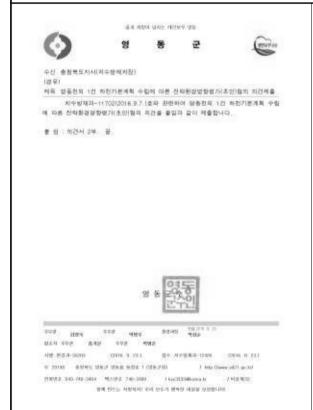
淋血器	영웅한, 조강전 하전기본계획(변경) 전약환경설발립가
お知りと	2016.09. 08(M) - 2016. 09. 23(E)
2502	□ 환경영흥명가 대성자력 - 변기호액과 범위금환의 전반역인 사람이 의원하게 제시되었다. □ 환경영흥우살인 - 전환, 영화관설등 유지함 수 있는 가단층 리원으로 조선으로록 건물기 변경하기, 지수 및 이수 기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감당하이다면 현 - 전환, 영화관계환연의 대안 - 난 시단계획은 미수 및 지수, 원원환경을 보건하는 사업으로 하면 보장을 해당 성공을 효율을 이루도록 계획되어야 하다, 독점 사업으로 보장되었다. 지수 및 지수, 원원환경을 보건하는 사업으로 하면 보장을 해당 성공을 효율을 이루도록 계획되어야 하다, 독점 사업으로 문화를 해당 성공을 효율을 이루도록 개최되었다. 최대, 독점 사업으로 문화를 해당 성공을 효율을 이루도록 기업기 경우된 지역은 환경환승이 최소명의 목소를 수정하여다 합 - 관광의 목소를 사건이 기업을 막은 권료하여다여 함. □ 문화를 제상을 하면 및 유명을 취임적인 기업을 막은 경로에이다여 함. □ 문화를 제상되었다. 대학교 환경 기업기 기업으로 무건 기업 기업이 공사시기점 조용하고, 기념수로 설계 및 목대한 가업도록 무기를 기업이 공사시기점 조용하고, 소용관계를 받는 문화로인 기업인 등 보기를 제상이 기업으로 무기되었다. 기업으로 관심인 기업을 되었다. 기업으로 하면 기업이 기업으로 가입되었다. 기업으로 의 기업이 기업으로 기업을 되었다. 기업으로 의 기업으로 함께 기업으로 기업으로 보기 기업으로 기업으로 기업으로 기업으로 기업으로 기업으로 기업으로 기업으

상기와 같이 환경망환평가협의 성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H. 1939887838 We 8 2 W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권하

### 영동군(안전관리과)



#### 조강 전략환경영향평가(조안) 환경과 의진

- 환경영향령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명 제7 법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 개발개본계획으로 승인가관의 작은 해당 계획을 승인 등을 하기 전에 급강유역환경영화 협의하여야 함.
   환경영향령가 검토대상 사업은 '급강구객 요관리 및 주면지원 등에 관한
- 환경영환평가 검토대상 사업은 '급강수재 요관리 및 주관치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권요점총괄합당 대상이므로 얼굴군수와 사진 협의 목 관약 함.
- 공사보 인원 먼지, 도사유용등 환경호합량성이 예상되고, 한 주변 주기 지역 및 농경지당 생활 환경에도 영향이 예상되므로 원환경적이고, 지역원성에 갖는 지상당한산을 수행하기 하렴.
   도심지역을 주기지역은 환경영합점가 대상지역 설점시 확대하여 평가하
- 기 마함. - 사업구간은 매원인 급장 상류로 도사 유용 발적 계획 및 유류 유용시
- 배상인감체계등 자체발체계획을 구체되고요 수립하기 바람 - 배산먼지 발생사업 신교, 목정공사사원선교장 환경관한 규정에 따른 안·해가-신교등의 사전점차 인해가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영동군(환경과)

# 3.5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결과

구 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u></u> 초 안	금 요 역 환경청	.	○동 내용은 초강 하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검토의견으로서, 아래의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의 이·치수 측면 뿐 아니라 자연친화적 내용이 중점적으로 검 토·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 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환경과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의 정비 계 획 수립	- 하천의 이·치수 측면 뿐 아 니라 자연친화적 내용이 검 토·반영될 수 있도록 본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기본계 획을 수립하였음 ○ 반영 -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 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하천환경과 재해로 인한 피 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하천 상·하류 구간 환경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천 유역 영향과 관리 를 위한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결과를 도출한 근 거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결과는 최 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하천 상·하류 구간 환 경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 천 유역 영향과 관리를 위한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였 음 ○ 반영 - 관련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	

구 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호 안	금강 유역 환경청	Ⅱ. 항목별 검토 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단순히 관련 계획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계획과 현재 수립하는 계획의 일치하는 내용 및 변경된 내용 등을 분석 하여 제시하여야 함	- 관련 계획과 현재 수립하는 계획의 일치하는 내용 및	
			나. 총 연장 중, 기 수립한 하천기본 계획과 현재 수립하는 계획의 연계성(통일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과	
			감돌고기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주요 생물서식지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사업구간 내 서식 또는 서식가능성이 있는 주요보호종은	- 법정보호종인 수달, 황조롱이, 감돌고기 등 주요 생물서식 지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사업구간 내 서식 또는 서식 가능성이 있는 주요 보호종 은 도면 및 위성사진에 출현 지점, 출현 예상지점, 분포 등을 개수계획과 중첩(구간	
			나) 사업구간 내 생태·자연도 1등 급 지역은 원형보전이 가능하 도록 상세한 구역경계를 설정하 고, 기초현황 자료를 조사하 여 제시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현황과 개수계획을 도면 및 위성사진에 중첩(구 간좌표 포함)하여 표시	- 사업구간 내 생태·자연도 1 등급 지역은 원형보전이 가 능하도록 구역경계를 설정하 고, 기초현황 자료를 조사하 여 제시하였음 - 생태·자연도 현황과 개수계	

구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호 안	금강 유역 환경청	Ⅱ. 항목별 검토 의견	다) 사업구간 내 보와 낙차공 현황 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당내 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래 설치목적에 따른 기능을 상실 한 시설은 철거를 검토하여야 함	- 계획구간 내에는 보와 낙차 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보와 낙차공 설치계획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가) 하천은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하도정비는 가급적 배제하여 하천의 다양 한 자연적 하상구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금강 합류구간 및 산림과 연계된 공간은 가능한 하천시설물설치를 지양	- 하천은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하도정비는 가급적 배제하여 하천의 다 양한 자연적 하상구조가 유 지되도록 계획하였음	
			나) 호안은 물리적 안정성 확보, 수생태계·육상생태계의 단절방 지 및 다양한 수변식물의 정 착을 위해 가능한 완경사로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호안공 법을 적용하여야 함 - 식생옹벽, 파라펫 등 콘크리트 제품은 경관상 이질감이 들고 식생활착도 극히 제한적인 바, 가급적 최소한으로 적용 - 경사가 급하여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자연석 쌓기 등의 인공적인 공법을 지양하 고 현재의 자연 호안으로 축 제·보축	- 호안은 물리적 안정성 확보, 생태계의 단절방지 및 수변 식물의 정착을 위해 가능한 완경사로 조성하고, 친환경 적인 호안공법을 적용하였음 - 호안블럭, 자연석붙임, 돌망 태 등 친환경적인 호안공법 을 적용하고, 파라펫 등 콘크리트 제품은 최소한으로 보축구간에만 적용 - 계획구간 중 침수빈도가 높고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만 축제	
			3) 수환경의 보전 가) 수질조사지점 선정사유 및 조 사지점의 현황 자료를 제시하 여야 함	○ 반영 - 수질조사지점 선정사유 및 조사지점의 현황 자료를 제 시하였음	

구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 호 안		유역 항목별	<ul> <li>타 지류와의 합류 또는 오염물질 유입, 개수계획 예정 등수질조사지점 선정사유를 제시</li> <li>수질조사지점과 개수계획을 위성사진 등에 중첩(구간좌표 포함)하여 표시</li> </ul>	- 타 지류와의 합류 또는 오염 물질 유입, 개수계획 예정 등 수질조사지점 선정사유를 제시 - 수질조사지점과 개수계획을	
			<ul> <li>나) 홍수량에 대비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축제 및보축,호안 정비 등의 구조물설치 위주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홍수관리 측면에서 친환경적 대안을 검토 하여야함</li> <li>용당지구는 기존지방도를 제방 검용도로로 이용하고 제방과도로사이의 토지를 수변완충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li> <li>시금 2지구는 축제계획 대신산지까지의 구간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li> <li>한석 1,2지구는 하폭 및 제방고부족으로 계획하였으나,우안측이 매립되어 하폭확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저수로구간의 준설을 가급적 지양하고 제방덧쌓기 등의대안검토</li> </ul>	- 홍수관리 측면, 주민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축제 및 보축, 호안 정비 구간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용당지구는 경제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고, 홍수위 변화에 따른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축제계획을 수립하였음 - 시금2지구 구간은 축제계획 대신 산지까지의 구간을 홍 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임 - 계획구간 우안측의 한석1지 구는 저수로 구간에 대한 준설을 지양하고 제방덧쌓기로 계획하였으며, 좌안측의 한석2지구는 치수안정성, 기존	

구 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초 안	금강 유역 환경청	II. 항목별 검토 의견	다) 둑마루 포장여부를 명확히 제 시하고, 포장할 경우 생태적 기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콘크 리트 포장 등의 불투수성 포장 을 지양하여야 함	- 현지여건, 하천공사설계지침 및 기존 둑마루 현황 등을	
			라) 대상 하천의 하류 수변구역 해당구간은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방 등 하천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함  - 수변구역 내 개수계획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위성사진 에 중첩하여 표시	- 계획구간 중 수변구역에 해 당되는 구간은 자연성을 최 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기 존 교량은 존치시키고, 제 방 등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수변구역 내 개수계획 여부를	
			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반영 -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농경 지는 하천법상 농작물을 경 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 으며, 농작물 경작금지 표 지판 등을 설치하는 관리방 안을 수립하였음	
			다. 기타 1)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 여야 하며, 미반영 시에는 미 반영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당 페이지를 함께 제시	- 본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 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하 였으며, 부득이하게 미반영 시에는 미반영 사유와 대안 을 제시하였음	

구 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초 안	금강 유역 환경청	II. 항목별 검토 의견	2) 위성사진과 도면 등에 축제 및 보축계획, 교량 및 보 정비계획, 지구구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첩(구간좌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및 보축계획, 교량 정비계획,	
			3)「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6-131호)」에 따라 작성하여야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획서 사본 등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를제시 - 현지조사표와 참여자 명단 등은규정의 (별표2) 서식에 따라 조사지점 및 시간, 조사자의 서명・날인 후제시. 끝.	- 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 부 고시 제2016-131호)에 따라 작성하였음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 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 제시 - 현지조사표와 참여자 명단 등은 규정 서식에 따라 조사	
	충청 북도 (환경 정책과)	기타	○본 계획은 지방 하천인 관리운영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으로 상위계획과 부합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규 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 하여야 함	- 본 계획은 초강 하천기본계 획(재수립)으로 상위계획에	
			○개발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일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7 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승인(인· 허가 등)권자는 승인 등의 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 부과자료를 우리도(환 경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금회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 승인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	

구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초 안	충청 북도 (환경 정책과)	기타	○사업계획구간 내 현지조사결과 수 달, 원앙, 황조롱, 감돌고기 등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사업시행 으로 인한 서식, 먹이원 등에 영향 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 가 지침"('13.11)에 따라 동일하거 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 조성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반영 - 사업시행시 법정보호종의 서식, 먹이원 등에 영향을 줄우려가 있을 경우"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동일하거나유사한 수준의 서식지 조성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겠음			
			○ 하천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유역의 강우 및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홍수 량, 홍수위, 비점오염원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과 유역특성 에 맞는 친환경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추 진함이 바람직함	- 계획구간이 위치한 하천 유역의 강우 및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홍수량, 홍수위, 비점오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과			
				으로 환경 발생 사업 등)을 사 발생되는 따라 적정	○사업 시행 시 공사가 따르는 사항 으로 환경관련 제반규정(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추후 계획구간 공사시 환경 관련 제반규정(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시행 전.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 생 또는 예측의 부 적정 등으로 계 획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오 염 등)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에 대한 원인규명 및 피해대상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 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후 전략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 적정 등으로 계획구간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 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쪽)
초 안	충청 북도 (환경 정책과)	기타	○본 검토의견은 우리도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법 및 타 부서소관 관련사항은 별도의 검 토·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야 함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 법 및 타 부서소관 관련사 항은 별도의 검토·협의를	
	충청 기타 북도 (수질 관리과)	기타	○ 동 계획지구는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금본E,보청A, 초강A 단위유역에 해당되어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8조에 따라 구조물설치등 공사시행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추진하여야 하므로 각 단위유역별로 영동군(금본E, 초강A), 옥천군(보청A)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함	- 본 계획구간이 위치한 지역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단위 유역 중 초강A 구간에 해당 되므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 부하량을 산정하여 영동군	
		○ 사업예정지는 수변구역으로 금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행위제한)에 의거 행위 제한 여부를 사업시행전 영 동군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계획구간 시점부 주변은 수 변구역에 포함되므로 관련		
	영동군 <i>7</i> (안전 관리과)	기타	○평가항목과 범위결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적정하게 제시되었음	○ 반영 -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대상지역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였음	
			○ 하천의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도록 검토 가 필요하며, 치수 및 이수 기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하천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	

구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초 안	영동군 (안전 관리과)	기타	○본 사업계획은 이수 및 치수, 하천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하천본 질의 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구간 중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은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본질의 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구간 중 자연경관이 우수 하고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은 환경훼손이 최소화						
							가급적 인공적 직선하천은 7 고 면밀한 자연생태현황 를 통하여 하천 구간내 자연서식 대가 변형되거나 단절되지 (	○ 하천의 특성과 하천의 유속을 고려, 가급적 인공적 직선하천은 지양하 고 면밀한 자연생태현황 조사를 통하여 하천 구간내 자연서식 식생 대가 변형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기법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함	-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하천 의 유로 변형을 최대한 지양 하고, 자연생태현황 조사를 통해 계획구간 내 자연서식	
			○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를 피하여 공사 시기를 조절하고, 가배수로 설치 및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를 설치 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준설로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물돌리기공법 적용						
			해 주 영하고 환경오 하여 해가 며, 스 경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의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 환경 및 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정에 민원이 발생될경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오염 저감방 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					

구 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초 안	영동군 (환경과)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법 시 행령 제7조 별표2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으 로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승 인 등을 하기 전에 금강유역환경 청과 협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 계획으로 본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총 량할당 대상이므로 영동군수와 사 전 협의 하여야 함	- 본 계획은 금강수계 수질오 염총량할당 대상이므로 사	
			○ 공사로 인한 먼지, 토사유출 등환경오염발생이 예상되고, 천 주변 주거지역 및 농경지등 생활환경에 도 영향이 예상되므로 친환경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도심지역 등 주거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시 확대하여 평가하기 바람	- 계획구간 공사시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에 예상되므로 친 환경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사업 특성 및 주변 현황 등을 고	
			○사업구간은 하천인 금강 상류로 토사 유출 방지 계획 및 유류 유 출시 비상연락체계등 자체방제계 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 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금강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 사 사전신고 등 환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절차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 사업시행시 비산먼지 발생사	

구 분	의 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설 명 회	지역 주민 의견 (질의)	기타	○ 용산면 시금리 466번지 일대(시금 2지구)는 진입로가 없으며 영동군 에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 업에서 토지매입을 검토하고 있으 므로 축제보다는 토지매입을 요망	○ 반영 - 시금2지구 구간은 축제계획 대신 산지까지의 구간을 홍 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임	
			○심천면 용당지구(축제 L=820m) 잔여토지 매입 요망	○미반영 - 용당지구는 경제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고, 홍수위 변화에 따른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제계획을 수립하였음	
			○ 단용교 상류 우안측 농경지에 역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